

구미시 해외새마을시범마을 조성사업 출연안



구 미 시

구미시 해외새마을시범마을 조성사업 출연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2. .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가. 새마을운동의 성공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여 인류공동 번영에 기여하고, 개발도상국의 빈곤 퇴치와 삶을 질 향상을 위하여 (재)새마을재단에서는 해외새마을시범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나. 이에 구미시에서는 사업 동참을 통하여 새마을중주도시 구미시의 위상을 제고코자하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2023회계연도 구미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하는 (재)새마을재단의 해외새마을시범마을 조성사업의 출연 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연 개요

- (1) 출연기관 : (재)새마을재단
- (2) 출연금액 : 금150백만원 (1차년도 소요예산)
- (3) 사업기간 : 2023년 ~ 2027년(5년간)
- (4) 사업내용 : 해외새마을시범마을 조성
- (5) 출연근거 :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출연금의 지급 등)

나. 주요 사업

- (1) 해외시범마을 조성
- (2) 새마을조직 육성 및 주민의식 교육
- (3) 소득 증대사업
- (4) 기반시설 및 생활환경 개선 등

다. 출연의 필요성

- (1) 새마을운동의 성공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여 인류공동 번영에 기여
- (2) 개발도상국의 빈곤 감소와 삶의 질 향상
- (3) 새마을운동 종주도시 구미시의 글로벌 위상 제고
- (3) 새마을운동 가치 계승·발전

라. 추진실적

- (1) 해외새마을시범마을 조성
 - 대상마을 : 스리랑카 헤와디웰러
 - 사업기간 : 2014년 6월 ~ 2019년 5월
 - 사업비 : 총 750백만원 (연 150백만원)
 - 참여기관 : 경상북도 새마을재단, 구미시, 코이카
 - 사업내용
 - 새마을리더 해외봉사단 파견 및 해외시범마을 조성
 - 새마을조직 육성 및 교육
 - 지역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 생활환경 개선 및 소득증대 사업 등
 - 추진실적
 - 새마을조직 육성 및 주민의식 교육(월 1회 140명)

- 새마을교육 및 인적 역량강화 교육 실시(월 1회 140명)
- 버섯협동조합 센터 건립 및 주민체육시설 설치
(재배사, 배지 작업장, 살균실, 배양실, 사무실, 조합원 교육장 등)
- 해와디젤러 버섯협동조합원 구성(127명)
- 주민 공동우물 설치(고성능 펌프 및 급수 배관)
- 현지 주민대상 물탱크 지원
- 학교 환경개선사업(천장 설치, 조명등, 선풍기 설치 등)
- 기대효과
 - 새마을운동의 성공 모델 확산을 통한 지구촌 빈곤퇴치에 기여
 - 환경개선 및 의식 교육을 통하여 자립역량 강화에 기여
 - 새마을운동 종주도시 구미의 글로벌 위상 제고
 - 인근 마을 및 사바라가무와 전체로 시범마을 조성사업 확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지방재정법」 제18조
- (2)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
- (3) 「경상북도 새마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8조

나. 예산조치 : 2023년도 예산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재)새마을재단 현황

□ (재)새마을재단 현황

① 기관명 : (재)새마을재단 주 소 : 경북 구미시 박정희로 155(사곡동) 새마을운동테마공원 글로벌관 2층			
② 기 관 소 개	새마을재단은 대한민국의 새마을운동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여 지구촌의 빈곤퇴치에 기여하고자 경상북도가 주 출연자가 되어 2012년 11월 설립한 비영리공익재단임		
③ 설 립 근 거	경상북도 새마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④ 연 혁	▪ 2012.11. 1. 재단 설립 등기 ▪ 2013. 1. 2. 법인업무 개시 ▪ 2013. 1.30. 재단 개소	⑤ 관 계 기 관	▪ 경상북도 ▪ 구미시
⑥ 주 요 기 능	▪ 새마을리더 해외봉사단 파견 및 시범마을 조성사업 ▪ 개발도상국 지도자 초청 새마을연수 ▪ 현지로 찾아가는 새마을 연수 ▪ 대학생 새마을 해외봉사단 파견 ▪ 글로벌 새마을 청년봉사단 운영 ▪ 국제포럼 및 국제기구협력사업 ▪ 새마을운동연구소 및 연수센터 운영		
⑦ 기관장 소 개	▪ 성명 : 이승중 ▪ 학력 : 서울대학교 졸업, NorthUniversity 정치학 박사 ▪ 경력 : 행정고시 합격(22회)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역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 역임 영남대학교 박정희새마을대학원 석좌교수 現)새마을재단 대표이사		
⑧ 조 직 기구도	*별첨 참고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출연금의 지급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 할 수 있다.

□ 「경상북도 새마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8조(출연금 교부) 도지사와 시장·군수는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 할 수 있다.

소 관 부 서		새마을과
입 안 자	과 장	박 경 자
	담 당	이 호 정
	담 당 자	정 민 정 (480-6802)